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12. 31.(화) 17:30  
(지 면) 2025. 1. 1.(수) 조간

## 2025년부터 지방공무원 육아여건 나아지고 보수 3% 인상 등 처우도 개선된다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

-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.
-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·보수 관계 법령\* 일부 개정안이 12월 31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  - \*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 공무원 보수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우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첫째,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은 기존 최대\* 1년이었으나, 휴직기간 전부(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)로 확대한다.
  - \* 첫째 자녀 1년(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전부), 둘째 이후부터는 전부 인정
-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.
- 둘째,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\*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. \* 공채 3년, 경채 4~5년
- 셋째,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·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,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.

□ 넷째,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\*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(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)으로 단축한다.

\*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범위에서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(2015년 신설)

□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」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먼저,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% 인상된다. 다만,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.6%까지 인상하여 인상률을 차등화했다.

※ 9급 1호봉 기준 봉급액(국가직 봉급표 준용) 약 6.6% 인상 = 공통인상분 3% + 추가인상분 3.6%

□ 지방공무원 수당은 ①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, ②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, ③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.

□ 첫째,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.

○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%(1년 미만)~15%(4년 미만)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,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%(1~2년 미만)~20%(3~4년 미만)로 인상된다.

○ 또한,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2024년 9,860원(1시간)에서 2025년 10,579원(1시간)으로 인상된다.

□ 둘째,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.

○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,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다.

※ (민원업무수당 가산금) 민원업무수당(5만 원) 지급대상자 30% 범위에서 월 3만 원 추가 지급 (사서수당 인상) 5급 이상 월 3만 원, 6급 이하 월 2만 원 → 각 월 1만 원 인상

○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 상호 파견\* 공무원 및 민간기업 전담직위 지방공무원\*\*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이 확대된다.

\* 지역교육 현안 등 대응을 위한 시도↔교육청 파견 등, \*\* 민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상시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근무하는 공무원

※ (직급보조비 가산금) 집행기관상호파견 월 10만 원(6급이하) ~ 20만 원(4~5급)/민간기업 전담직위 월 30만 원 내

- 또한,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,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·과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.
- 셋째,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가 개선된다.
-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,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(상한액 내)의 100%를 지급한다.

구분	현행	개선
지급액 상한액	월봉급액의 80% / 150만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1~3개월 월봉급액의 100% / 250만 원</li> <li>▶ 4~6개월 월봉급액의 100% / 200만 원</li> <li>▶ 7개월 이후 월봉급액의 80% / 160만 원</li> </ul>

- 또한,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‘육아휴직수당’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‘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’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.

※ 상기 육아휴직 + 육아기근무시간 단축 수당 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1년 6개월까지 지급 가능  
- 아울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8세(초등 2)에서 12세(초등 6)로 확대된다.

- 마지막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,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각 1만 원 인상한다.

※ 자녀 가족수당: (당초) 첫째 3만 원, 둘째 7만 원, 셋째 이후 11만 원  
→ (변경) 첫째 5만 원, 둘째 8만 원, 셋째 이후 12만 원

담당 부서	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	책임자	과 장	하인호 (044-205-33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민 (044-205-3347)
		담당자	사무관	이영규 (044-205-335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

# 참고1

## 주요 개정 내용

### □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주요 개정 내용

구분	현행	개선안	비고
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	<p>◇ 육아휴직기간 전부 경력 인정</p> <p>○ 첫째 자녀 1년*, 둘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육아휴직기간 경력 인정 * 배우자가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3년 전부 인정</p>	<p>○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경력 인정 (자녀 1명당 3년)</p> <p>※ 「지방 연구지도직 공무원 규정」 도 동시 개정 추진</p>	국가공무원 동시 추진
	<p>◇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</p> <p>○ 신규임용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기 위해서는 전출제한기간 이상 근무 필요</p>	<p>○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</p>	지방공무원 개별 추진
②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	<p>◇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</p> <p>○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자치단체 내로 한정*되어 효과 미비 * 파견, 전보, 휴가, 근무지 지정 등</p>	<p>○ 전출제한기간 내*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의 '전출' 허용 * 공채 3년, 경채 4년</p>	지방공무원 개별 추진
③ 저연차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	<p>◇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완화</p> <p>○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 또는 학습·연구 등을 목적으로 자기개발휴직 사용 가능</p>	<p>○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5년 이상 → 3년 이상으로 단축 (재사용 요건도 10년 이상 근무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)</p>	국가공무원 기 개정
	<p>◇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 지급범위 확대 근거 마련</p> <p>○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만 수당 지급</p>	<p>○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</p>	국가공무원 동시 추진



구분	개정 내용	비고
4. 육아휴직수당 인상	① 육아휴직수당 인상 - (현행) 월봉급액 80%, 150만원 限 - (개선) 1~3개월 월봉급액 100%, 250만원 限 / 4~6개월 월봉급액 100%, 200만원 限 / 7개월 이후 월봉급액 80%, 160만원 限	
	② 육아휴직수당 휴직 중 공제제도 폐지 - (현행) 첫째자녀 휴직 중 85% 지급(공제 금액은 복직 후 일시금) - (개선) 휴직 중 공제 없이 지급 ※ 둘째자녀 이후는 휴직 중 공제없이 지급('24.1월~)	폐지
	③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- (현행) 1개월째 200만원 限 - (개선) 1개월째 250만원 限	
	④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수당 및 상한액 인상 - (현행) 1~3개월째 월봉급액 100%, 250만원 限 / 4~12개월째 월봉급액 80%, 150만원 限 - (개선) 1~3개월 월봉급액 100%, 300만원 限 / 4~6개월 월봉급액 100%, 200만원 限 / 7개월 이후 월봉급액 80%, 160만원 限	
5.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인상	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자녀 연령 확대 - (현행) 8세 또는 초등 2년 이하 - (개선) 12세 또는 초등 6년 이하	
	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액 산정 시 봉급액 상한액 인상 - (현행) 최초 10시간 200만원 限 - (개선) 최초 10시간 220만원 限	
6. 육아휴직수당 등 지급기간 특례 신설	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, 한부모, 장애아동* 부모의 경우, 육아휴직수당,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 → 18개월 확대 (두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한 기간) *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	

## 참고2

#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에 따른 개선 효과

### ■ 사례 1: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경력 인정\* 확대

\* (현행) 첫째 자녀 1년(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전부), 둘째 이후부터는 전부 인정

- ▶ △△도에서 '19.12월에 나란히 6급으로 승진한 김○○주무관과 이○○주무관은 각각 첫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3년('20.12~'23.12)씩 하고 복직했다.
- ▶ 김○○주무관은 공무원 배우자도 동시에 6개월 휴직을 하면서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고 대우공무원 재직기간을 충족하여 지난 7월 초\*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됐다. \*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5년 → 4년으로 단축(행안부 예규 개정/'24.6.27.)
- ▶ 반면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이○○주무관은 첫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년만을 경력으로 인정받았기에 '26년 1월이나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하다.

⇒ 임용령이 시행되면 법령 시행 전에 휴직했던 공무원도 경력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○○주무관은 바로 다음 달 1일자로 대우공무원\*으로 선발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\* 대우공무원 수당은 본봉의 4.1%(6급 10호봉 기준 약 133,400원)

### ■ 사례 2: 자녀양육 공무원 상호교류 시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

- ▶ △△군 간호8급 ○○○주무관은 ●● 주거지에서 3살 쌍둥이 육아를 위해 현재 휴직 중이다. 복직할 경우 쌍둥이 2명을 키우며 집에서 85km 이상되는 근무지로 출·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직이 두려워서 4년째 휴직 중이다. ○○○주무관은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을 찾아 상호교류하기로 합의했다.
- ▶ 그러나 ○○○주무관은 신규임용자에게 적용되는 전출제한기간\*(통상 3~5년)에 해당되어 교류를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. \*전출제한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실 근무기간으로 산정

⇒ 임용령이 시행되면 ○○○주무관은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임용권자의 동의 하에 상호교류할 수 있게 되어 출·퇴근 거리를 대폭 단축해 육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.

### ■ 사례 3: 성범죄 등 피해 공무원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

- ▶ \*\*시에 근무하는 ○○○주무관은 기관 내 상급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전출제한기간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지 못하고 있다. 또한 가해공무원도 징계처분은 받았으나 같은 자치단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.
- ▶ ○○○주무관은 상급자인 가해공무원이 인사문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까 염려스럽다.

⇒ 임용령이 시행되면 ○○○주무관은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.